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3년 산림자원개발원 종합감사 -

2023. 12.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권고	회 수		감 액		추 징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7건	2	5	0	0	0	0	0	0	0
1	0 0 0 0 0	세입세출외현금관리 부적정		1							
2	0 0 0 0 0	보통예금 계좌관리 소홀	1								
3	0 0 0 0 0 0 0 0 0 0	신용카드 관리 업무 부적정		1							
4	0 0 0 0 0	불용품 폐기처리 절차 부적정		1							
5	0 0 0 0 0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부적정	1								
6	0 0 0 0 0	시설공사 하자 검사 소홀		1							
7	0 0 0 0 0	시설부대비 예산 집행 부적정		1							

2. 처분요구일람표

1.	세입세출외현금관리 부적정 (주의)	1
2.	보통예금 계좌관리 소홀 (시정)	4
3.	신용카드 관리 업무 부적정 (주의)	6
4.	불용품 폐기처리 절차 부적정 (주의)	9
5.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부적정 (시정)	11
6.	시설공사 하자 검사 소홀 (주의)	15
7.	시설부대비 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18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산림자원개발원
관 계 부 서	00000
내 용	

산림자원개발원 00000(이하 “00000”)는 「경상북도 재무회계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재무회계 규칙」(경상북도 규칙 제2910호, 2018.12.10.) 제49조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부채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6조에 따르면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하며 출납원은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 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훈령 제77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반환 청구하여야 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같은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따라서 OOOOO에서는 산림자원개발원 세입세출외현금통장에 현금을 받으면 세입세출외현금통장 잔액 및 입출금 내역이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일치되도록 이를 정리하고 세입세출외현금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했다.

그러나 OOOOO에서는 2020년 8.4.~12.31. 150일의 기간중에서 세입세출외현금계좌(단위농협 0000-00-000000)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가 88일 불일치하였으며¹⁾ 그 차이는 최대 ---원이었다.

2021년에는 1년 365일의 기간중에서 314일 불일치하였는데²⁾ 그 차이는 최대 ---원이었으며 실제로 통장에 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입금된 것처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작성하여 최대 ---원의 금액이 통장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출납부에 기재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의 잔액이 실제 통장잔액보다 크도록 비정상적으로 운용하였다.³⁾

2022년에는 1년 365일의 기간중에서 41일 불일치하였는데⁴⁾ 그 차이는 최대 ---원이었으며 실제로 통장에 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입금된 것처럼 세입세

1)
2)
3)
4)

출외현금출납부를 작성하여 최대 ---원의 금액이 통장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출납부에 기재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의 잔액이 실제 통장잔액보다 크도록 비정상적으로 운용하였다.5)

2023년에는 1.1.~9.7. 250일의 기간중에서 84일 불일치하였는데6) 그 차이는 최대 ---원이었으며 실제로 통장에 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입금된 것처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작성하여 최대 ---원의 금액이 통장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출납부에 기재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의 잔액이 실제 통장잔액보다 크도록 비정상적으로 운용하였다.7)

한편, 세입세출외 현금의 연도별 잔액은 2020년 ---원, 2021년 ---원, 2022년 ---원인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부기하지 않은 채 이월하여 잔액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림자원개발원장은

앞으로 세입세출외현금통장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가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등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5)
6)
7)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보통예금계좌 관리 소홀
소 관 청 산림자원개발원
관 계 부 서 00000
내 용

산림자원개발원(이하 “개발원”)은 「경상북도 재무회계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법인카드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 기준”에 따르면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부서장, 관서별 지출원, 회계부서장은 주기적(사업부서장 분기별, 관서별 지출원 반기별, 회계부서장 연 1회 이상)으로 계좌 거래내역, 잔액 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개발원 00000에서는 2019.00.00. #####⁸⁾에서 실수로 개발원 카드입출금 통장(단위농협 000000-00-000000)에 입금한 ---원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가 도 감사를 대비하던 중 이를 알게 되어 2023.00.00. 당해 금액을 #####에 반납조치 하였으며

8)

개발원 카드계좌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험금 정산액 등 1,680,936원에 대한 환급, 세입 등의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23년 10월 감사일 현재 방치중에 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장, 관서별 지출원, 회계부서장이 각각 분기별, 반기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계좌 거래 내역과 잔액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계좌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림자원개발원장은

- ① 규정대로 주기적으로 계좌 거래 내역과 잔액검사를 실시하시고 세입세출 외현금의 수납과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사용하시기 바람 (통보)
- ② 부적절하게 방치된 1,680,936원에 대한 세입, 환급 등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신용카드 관리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산림자원개발원
관 계 부 서 00000, 000000
내 용

산림자원개발원 각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1.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 조치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이하 "인센티브"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자원개발원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포인트를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여야 하나, 00000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20.08. ~ 2023.10.) 중 [표1]과 같이 1회 세입 조치를 하였다.

그리하여 적립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한 신용카드 포인트 일부가 소멸 되어 세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1】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내역

- 내용 생략 -

2. 신용카드 이용대금 업무처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자원개발원에서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하여야 하나, 결제일까지 입금 조치하지 않고 지연 입금하는 등 [표2]와 같이 총 7건, 10,758원의 연체료를 발생시켰다.

【표2】 신용카드 연체내역

- 내용 생략 -

3. 신용카드 발급대장 등 관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야 하고, 발급대장을 현행화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산림자원개발원에서는 담당공무원 교체 시에 비밀번호 변경 및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서면(내부결재)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고, 발급대장을 현행화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산림자원개발원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는 연 1회 이상 세입하시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결제일까지 입금하시고,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 시 비밀번호 변경 및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시고,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불용품 폐기처리 절차 부적정
소 관 청 산림자원개발원
관 계 부 서 00000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상북도 물품관리 조례」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따르면 물품관리관은 원장비가 사용 불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서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에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8조(불용품의 폐기)는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매수인이 없을 때,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은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 하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자원개발원에서는 불용물품 중 내용연수 초과 및 노후로 인해 불용결정한 물품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산림자원개발원에서는 [표]와 같이 텔레비전 등 12대의 물품에 대해 불용품 소요조회 후 내용연수 초과 및 노후를 사유로 불용결정한 물품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불용품을 폐기처분한 사실이 있다.

[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미작성 내역

- 내용 생략 -

조치할 사항 **산림자원개발원장은**

앞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불용품을 폐기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부적정
소 관 청	산림자원개발원
관 계 부 서	DDDDD
내 용	

경상북도 산림자원개발원에서는 abcde 등에 종사할 기간제근로자를 매년 채용하고 있다.

1. 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 접수방법 부적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는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자원개발원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시 신청서류에 대해 접수받는 방법을 직접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도 안내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산림자원개발원에서는 기제근로자를 공개채용하면서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하지 않고 [표1]과 같이 직접 방문접수로 한정하여, 구직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 접수방법

부 서	공고기간	채용 구분	채용기간	채용서류 접수방법
합 계		18건		
DDDDD		생략		방문접수
DDDDD		생략		방문접수
DDDDD		생략		방문접수
DDDDD		생략		방문접수
DDDDD		생략		방문접수
DDDDD		생략		방문접수
DDDDD		생략		방문접수
DDDDD		생략		방문접수
DDDDD		생략		방문접수
DDDDD		생략		방문접수
DDDDD		생략		방문접수
DDDDD		생략		방문접수
DDDDD		생략		방문접수
DDDDD		생략		방문접수
DDDDD		생략		방문접수
DDDDD		생략		방문접수
DDDDD		생략		방문접수
DDDDD		생략		방문접수
DDDDD		생략		방문접수

2.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자 채용서류 보관 부적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자원개발원에서는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 미채용자의 채용서류는 지체 없이 파기했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산림자원개발원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났음에도 [표2]와 같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32명의 미채용자의 채용서류를 보관하고 있다.

[표2]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자 채용서류 미파기내역

(단위 : 명)

부 서	채용여부 확 정 일	반환 청구 기간	채용 구분	응시 인원	채용 인원	미채용 인 원
합 계			13건	60	28	32
DDDDD			생략	3	1	2
DDDDD			생략	3	2	1
DDDDD			생략	9	8	1
DDDDD			생략	15	4	11
DDDDD			생략	2	1	1
DDDDD			생략	4	1	3

부 서	채용여부 확 정 일	반환 청구 기간	채용 구분	응시 인원	채용 인원	미채용 인 원
DDDDD			생략	3	1	2
DDDDD			생략	4	2	2
DDDDD			생략	2	1	1
DDDDD			생략	6	2	4
DDDDD			생략	3	2	1
DDDDD			생략	3	2	1
DDDDD			생략	3	1	2

조치할 사항 산림자원개발원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미채용자의 채용서류는 파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하자 검사 소홀
소 관 청 산림자원개발원
관 계 부 서 00000
내 용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 00000(이하 “00000”라 한다)에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 후 하자검사조서⁹⁾를 작성하고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00000에서는 시설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 후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9)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abcdefg 공사” 등 17건의 공사에 대해 하자를 검사하지 않았다.

[표] 하자 검사 미실시 현황

- 내용 생략 -

조치할 사항 **산림자원개발원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정기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부대비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산림자원개발원
관 계 부 서 00000
내 용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 00000(이하 “00000”라 한다)에서는 산림과학박물관 보완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2021. 1. 1. 시행)」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 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21. 7. 19. 시행)」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시설부대비는 당해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00000에서는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

경비·물품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시설 부대비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자 제공 다과 구입” 등 4건을 시설부대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연번	지출일자	적 요	금 액	지출과목	적정 지출과목
	계				
1	2021.--.--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자 제공 다과 구입		시설부대비 (401-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3-03)
2	2021.--.--	음향 장비 임차			사무관리비 (201-01)
3	2021.--.--	abdmsu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4	2021.--.--	abdmsu 착수보고회 참석수당 및 여비지급			

조치할 사항 산림자원개발원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시설부대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주의)